

의안번호	2200338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4. 6. 13.
추 계 번호	24F07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3 (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)	○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하여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부여 －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: 기업과 지방대학간 계약을 통해 설치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의 운영비용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3 (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해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을 따를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의3 신설)
- 개정안에 따른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, 이를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준하여 기업규모별로 운영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 또는 당해 지출분의 일부를 세액공제
 - － 현행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가분과 당기분 중 택일하여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

[표 1] 현행 기업규모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	기업규모별		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증가분 (전년 대비 초과분)	50	40	25
당기분 (당해 지출분)	25	8	최대 2 ¹⁾

주: 1)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$\times$ 1/2로 계산

- 개정안은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준하여 세액 공제 적용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개별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지출 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
 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개별기업별로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를 특정하고, 향후 운영비 지출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
 - 개정안에 따르면, 개별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는 기업규모별로 전년 대비 증가분의 25~50% 또는 당해 지출분의 0~25%의 공제율을 적용받음에 따라, 기업 규모별로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의 연도별 지출 추이를 추정할 필요
- 그러나 향후 기업규모별로 구분된 개별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지출 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지방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를 특정하여 향후 지출추이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개별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위임 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지출 중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특정할 수 없음
 - 참고로, 지방대학 계약학과와 설치·운영현황은 교육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, 계약학과 운영비 규모에 대한 자료는 지원주체(산업체, 외부기관, 대학자체, 학생 등)별 비중만 있고 액수는 존재하지 않음
 - ※ 교육부에 따르면, 계약학과 운영비 중 학생경비 부담률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로 지원주체가 지불한 운영비의 액수를 포함하지 않음

[표 2] 지방대학¹⁾ 계약학과 설치·운영 현황: 2023년 기준

구분	계약학과의 체결계약 수(건)	학과내 정원(명) ²⁾	산업체 수(개) ²⁾	산업체 운영비 비중평균(%) ²⁾
지방대학 계	237	15,618	3,692	—
－ 대학	129	8,218	2,198	38.1
－ 전문대학	108	7,400	1,494	30.6

주: 1) 지방대학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을 기준
 2) 학과내 정원과 산업체 수는 계약별 자료의 단순합산으로 중복된 인원이나 산업체가 있을 수 있음
 3) 산업체 운영비 비중평균은 계약별 산업체 운영비 비중의 단순평균으로 계산
 자료: 교육부, 대학알리미 홈페이지(academyinfo.go.kr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